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기준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안 제13조의3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 인수·합병의 중지 등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안 제18조의9 및 별표 1 신설)

해외 인수·합병 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해외 인수·합병 등의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해외 인수·합병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 ~ 5. 12., 6. 26. ~ 6.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술안보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그 밖에 기술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2. 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의 의견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대상기관”을 “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해당 기업등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판정 신청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조의5(중전의 제13조의3) 중 “법 제9조의2제1항 본

문”을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자(이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는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6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법 제11조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8항제2호”를 “법 제11조제9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
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3.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전부 소유한 외국기업 등과 공동 연
구를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외국정부의 인·허가, 인증 등을 받거나 외국기업 등과 소송을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제18조의3(중전의 제18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상기관
(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을 “대상기관”으로, “보유기관의”를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유기관의”
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로, “보유기관을”을 “해당 기관
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유기관”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

상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중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유기관”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5(중전의 제18조의4)제1항 중 “보유기관은”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으로, “제18조의3제1항 각 호”를 “제18조의4제1항 각 호”로, “보유기관이”를 “신고인이”로 한다.

제18조의6(중전의 제18조의5)제1항 중 “보유기관”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제18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유기관은”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으로,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제18조의4제1항제1호”로, “보유기관이”를 “신고인이”로 한다.

제18조의7(중전의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을 각각 “법 제11조의2제8항 또는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보유기관”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의2제10항제2호”를 “법 제11조의2제11항제2호”로, “관련된 보유기관”을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해당 보유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8(중전의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8항”을 “법 제11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의 제목 “(개선권고의 이행)”을 “(개선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의2 중 “법 제14조제8호”를 “법 제14조제1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을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과”를 “상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는 설문조사: 1년마다 실시

2. 현장방문조사: 2년마다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대상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5제1항”을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의7제1항”을 “제18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37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중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술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1일당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1일당 부과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해외인수·합병등의 금액이 1조원 초과인 경우 2) 해외인수·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 3) 해외인수·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해외인수·합병등의 금액이 1조원 초과인 경우 2) 해외인수·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 3) 해외인수·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800만원 600만원

비고

위 표 제2호에서 “해외인수·합병등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외인수·합병등이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이 단독으로

- 또는 제18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소유한 주식등(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등을 말한다)의 장부가격과 인수한 채무의 합계액 또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8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소유하려는 주식등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려는 채무의 합계액
2. 해외인수·합병등이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임대로 외국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으려는 금액 또는 경영의 위임으로 얻었거나 얻게 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해외인수·합병등이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대여 또는 출연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금액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300	500
나.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500	70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700	1,000
라. 법 제11조제10항 및 법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700	1,000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	700	1,000
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6호	500	700
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7호	30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기술안보센터의 지정)</u>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 획평가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그 밖에 기술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 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2. 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
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
안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에 제
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
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
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
핵심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
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 (생략)

②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
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의
견

4. (생략)

③·④ (생략)

해제) ①-----

-----.

1. -----

-----(이하 “기업등”이라 한
다)-----

2.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의 의견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기업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해당 기업등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
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등이 국
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illegible]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판정 신청을 받은 기

<신 설>

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자(이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신 설>

보유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

	<u>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는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u>
<u>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u>	<u>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 제1항 본문-----</u> ----- ----- ----- -----.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을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日數)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생략)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
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

----- . <단서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침해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illegible]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 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8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대상기관의

하지 않는다.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제7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①-----
----- 법 제11조제6항 및 제8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9항제2호 또는 제3호-----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 요청사실을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

제18조의2(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3.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전부 소유한 외국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외국정부의 인·허가, 인증 등을 받거나 외국기업 등과 소송을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1. 대상기관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 다. (생략)

2.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생략)

제18조의3(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 국가핵심기술
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국가핵심기술을 보
유한 대상기관의 -----

----- 해당 기관을 -----

3. ----- 국가핵심기술을 보
유한 대상기관-----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① -----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8조의4(해외인수·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의5(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해외인수·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
----- 제18조의4제1항 각 호-----
----- 신고인
이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① -----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 제18조의4제1항제1호-----

-----.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의6(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

② -----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

----- 제18조의4제1항제1호-----

----- 신고인이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
----- 법 제11조의2제8항 또는
제10항-----

-----.

② 법 제11조의2제8항 또는 제10항----- 국
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10
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
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
금지·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
련된 보유기관의 의견을 들으려
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보유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제18조의7(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8
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
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
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
·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신설>

-----.

③ ----- 법 제11조의2제11
항제2호 -----

----- 관
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
상기관----- 해당
기관-----
-----.

제18조의8(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9
항-----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
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u>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제19조(<u>개선권고의 이행</u>) ①・② (생략) <u><신설></u>	제19조(<u>개선권고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u> ④ <u>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u>
<u><신설></u>	
제19조의2(<u>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u>) <u>법 제14조제8호</u> 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제19조의2(<u>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u>) <u>법 제14조제12호</u> ----- ----- ----- -----.
제20조(<u>산업기술 침해신고</u>) ① <u>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u>	제20조(<u>산업기술 침해신고</u>) ① -- ----- ----- <u>하려는</u> ----- -----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
----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 상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1.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u><신 설></u> <u>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 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5제1항</u>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서류: 2015년 1월 1일 2. <u>제18조의7제1항</u>에 따른 사전검토의 신청 서류: 2015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 및 <u>별표</u>에 따른 과태료의 부	<u>방법으로 하는 설문조사: 1년마다 실시</u> 2. <u>현장방문조사: 2년마다 실시</u>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u>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1. <u>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u> ----- ----- ----- 2. <u>제18조의8제1항</u>----- ----- --- ② ----- ---- <u>별표 2</u>-----
--	--

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4월 1	-----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
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
과기준은 <u>별표</u> 와 같다.	----- <u>별표 2</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연 락 처	(044) 203 - 4854